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이라 함은 관세를 제외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제6장(무역구제)에 따라 부과된 관세
- 나.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율할당 또는 특혜관세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마.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3.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3.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 3.4 조 관세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3A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2.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세철폐계획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관세철폐계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품을 당사국의 관세철폐계획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상품을 관세철폐계획에 포함하는 양 당사국의 합의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감축단계분류를 대체하고, 부속서 3A에 대한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22.4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5 조 관세평가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에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6 조 수출관세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도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

제 3.7 조 수선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되는 상품

자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또는 수선이나 가공이 자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수선 또는 가공을 위하여 자국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인 반출상태에 있었을 경우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3.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비당사국의 그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 내의 가격책정·마케팅 및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3.9 조 세관 사용자 수수료

세관 사용자 수수료는 액수에 있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되며,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가 되거나 재정목적상 수입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과세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관 사용자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의 실질 가격에 상응하는 구체적 요율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3.10 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하거나 그 위협을 받을 경우,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994년도 GATT 및 1994

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이 조에 따라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다.